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21, 2층
(양재동)
[제10호의 2 서식]

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

전화 : 02 - 3453 - 9944
팩스 : 02 - 3453 - 0718

위 임 장

수 임 인 (대리인)	성 명	(-)
	주 소	

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**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** 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(어음·수표의 공증 등)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**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**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

액 면	금 (₩)		
발 행 일	. . .	수 취 인 (채권자)	
지급기일	. . .	발 행 인 (채무자)	
발 행 지		양 도 인	
지 급 지		양 수 인	
지급장소		양 도 일	

1.첨부서류: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(3개월이내)

년 월 일

위임인	성명 주소	(-) 인감
위임인	성명 주소	(-) 인감
위임인	성명 주소	(-) 인감
위임인	성명 주소	(-) 인감